

의안번호	제777호
의결 연월일	2024년 월 일 (제 회)

충청북도 정원문화 및 산업 진흥에 관한  
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발의자	이태훈 의원 등 7인
발의연월일	2024년 11월 13일

# 충청북도 정원문화 및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이태훈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777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24년 11월 13일  
발의자 : 이태훈, 노금식, 김호경,  
박용규, 변종오, 임영은,  
황영호

## 1. 제안이유

충청북도 정원문화 관련 교육의 효율성과 수목자원 또는 식물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는 ‘충청북도 정원교육센터’ 설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가. 정원교육센터의 설치, 운영 등을 규정함(안 제11조)

## 3. 조례안 : 붙임

## 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붙임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첨부

다. 협의 : 충청북도 환경산림국 산림녹지과

라. 조례안 예고 : 예고대상(의회홈페이지 게시 예정)

## 충청북도 정원문화 및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정원문화 및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(정원교육센터 설치·운영 등) ① 도지사는 정원 문화 및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, 정원과 관련된 전문 지식과 실무 능력을 체계적으로 교육하는 충청북도 정원교육센터(이하 “교육센터”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교육센터는 시민정원사의 양성, 정원 조성·관리 등 정원 관련 전문 교육을 포함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, 타기관 및 단체와 협력하여 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.

③ 도지사는 교육센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교육 참가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.

④ 제1항부터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센터의 설치·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.

⑤ 도지사는 교육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「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에 따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.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위탁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1조(시민정원사의 양성) ① 도지사는 도민을 대상으로 시민정원사 양성을 위한 교육, 실습 등의 교육과정을 개설·운영할 수 있다.</p> <p>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.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위탁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</p>	<p>제11조(정원교육센터 설치·운영 등) ① 도지사는 정원 문화 및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, 정원과 관련된 전문 지식과 실무 능력을 체계적으로 교육하는 충청북도 정원교육센터(이하 “교육센터”라 한다.)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 ② 교육센터는 시민정원사의 양성, 정원 조성·관리 등 정원 관련 전문교육을 포함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, 타기관 및 단체와 협력하여 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. ③ 도지사는 교육센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교육 참가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. ④ 제1항부터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센터의 설치·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. ⑤ 도지사는 교육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「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에 따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.</p>

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위  
탁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  
할 수 있다.

## 관계법령

### □ 「수목원·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」

제18조의16(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의 지정 등) ① 산림청장 또는 시·도지사는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하여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. ② 제1항에 따른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은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에 필요한 교육과정 및 교육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갖추어 산림청장 또는 시·도지사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. ③ ~ ⑥ (생략)

# 충청북도 정원문화 및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

## 1. 사업개요

- 충청북도 정원문화 관련 교육의 효율성과 수목자원 또는 식물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하고자 함

## 2. 비용 발생 요인

- 정원교육센터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  
(강사비, 인건비, 사무관리비, 공공운영비 등)

## 3. 관련조문

- 조례안 제11조(정원교육센터 설치·운영 등)
  - ① 도지사는 정원 문화 및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, 정원과 관련된 전문 지식과 실무 능력을 체계적으로 교육하는 충청북도 정원교육센터(이하 “교육센터”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  - ⑤ 도지사는 교육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.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위탁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

## 4. 비용 추계결과

### 가. 추계의 전제

- 추계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 5년간으로 함
- 추계기간(5년간)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
- 물가상승, 인건비 상승 등은 별도 반영하지 아니함
- 조례안 제11조(정원교육센터의 설치·운영 등)에 의거 정원교육센터 운영 및 관리 등에 대한 비용 추계

### 나. 추계 결과 : 500,000천원

- 연 사업당 최대 100,000천원 소요 예상

### 다. 재원조달방안 : 도비(도 100%)

## 5. 연도별 비용추계서

### < 연도별 비용 추계표 >

(단위 : 천원)

구 분		1차년도 (2025년)	2차년도 (2026년)	3차년도 (2027년)	4차년도 (2028년)	5차년도 (2029년)	계
세 입		-	-	-	-	-	-
-		-	-	-	-	-	-
세 출		100,000	100,000	100,000	100,000	100,000	500,000
(안 제11조) 정원교육센터 설치·운영 등		100,000	100,000	100,000	100,000	100,000	500,000
-		-	-	-	-	-	-
재원 조달		100,000	100,000	100,000	100,000	100,000	500,000
자체 수입	소 계	100,000	100,000	100,000	100,000	100,000	500,000
	지방세	100,000	100,000	100,000	100,000	100,000	500,000
	세외수입	-	-	-	-	-	-
지방채		-	-	-	-	-	-
기 금		-	-	-	-	-	-
시·군비		-	-	-	-	-	-
기 타 (차입금, 민자, 예비비, 자담 등)		-	-	-	-	-	-